공고 제 17 호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5년 04월 11일

화산동장 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박 *우	박 *우 1998-06-16	경기도 화성시 황계남길 (송산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5-03-27